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22

발의연월일: 2020. 9. 28.

발 의 자: 민형배 · 민병덕 · 김남국

신정훈 · 임호선 · 주철현

김정호・윤준병・이용빈

이해식 · 이탄희 · 천준호

양정숙 · 정태호 · 윤건영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,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해당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산안·결산 등을 이해관계에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사익 추구 등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현재 국회법에는 위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.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근본적으로 원천차단해 야 합니다.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 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.

이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

정하고자 합니다(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의원으로서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원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1.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외형거래액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)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
- 2.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 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의 임원
-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직역단체의 임원이었던 의원으로서 그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원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직역단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이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원의 상임위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되는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~	제39조(상임위원회의 위원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였던 의원으로서 그 직
	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
	나지 아니한 의원은 의원의 임
	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
	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
	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	1.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
	연간 외형거래액(「부가가치
	세법」 제29조에 따른 공급
	<u>가액을 말한다)이 100억원</u>
	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
	는 사기업체의 임원
	2.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
	동 이익과 상호 협력 등을
	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의
	<u>임원</u>
<u><신 설></u>	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
	직역단체의 임원이었던 의원으
	로서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
	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원은

	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
	2년 동안 직역단체를 소관하는
	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
	<u>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